

Q3

산불 예방을 위해 일반 등산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있나요?

A 일반 등산자는 산행이나 등산을 할 때 허가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구역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. 어느 곳의 입산이 금지되었는지는 산림청 통제구역 안내 사이트(https://hiking.kworks.co.kr/new_intro.aspx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그리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,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등산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면 안 됩니다. 위 사항을 어길 경우 「산림보호법」 제34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 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
마.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(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57조 제3항 제2호	30	40	50
바.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(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57조 제3항 제2호	10	20	30
사. 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	법 제57조 제4항 제1호	10	20	20
아. 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·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	법 제57조 제4항 제2호	10	20	20
자. 법 제34조 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, 인화 물질,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	법 제57조 제4항 제3호	10	20	20